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2023. 1. 19.(목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3년 1월 4일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월 5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월 16일

(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홍만표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한계를 해소하고,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 (안 제5조)

- 1) 교육장에게 위임한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무를 일부 삭제함 (안 제5조제38호)
- 2) 교육장에게 위임된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정함(안 제5조제39호)

### ○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·보안

(안 제5조제1호, 제6호, 제15호나목, 제34호, 제41호바목, 제6조1호, 6호, 11호, 제7조1호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영균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일부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제38호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,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, 진로·진학 지도에 관한 사항,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·감독 항목을 삭제하며, 제39호 중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임.

- 다만, 같은 조례가 지난 2021년 3월 1일 개정되었을 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국가법령센터 기준 “지역 중심의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과 행정능률 향상 및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하여” 으로 확인되는데 지난 2년간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
-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공·사립”을 “공사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나목 중 “취·해임”을 “취임·해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4호 중 “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”를 “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1호바목1) 중 “유·무선망”을 “유무선망”으로 한다.

### 가.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육 운영 지원

제6조제6호 중 “중·고등학교”를 “중고등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가목 중 “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6호,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호 중 “6월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<u>공·사립</u>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(이하 “관할학교”라 한다)의 다음 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생략)</p> <p>2. 삭제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(6월 이상)·복직(6월 이상 휴직)·직위해제·파견·퇴직·대우공무원선발·의원면직·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·경징계</p> <p>7. ~ 13. (생략)</p> <p>14. 삭제</p> <p>15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(사립학교 경</p>	<p>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<u>공사립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<u>6개월</u> -----<u>6개월</u> <u>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7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 ----- -----</p>

영자 포함)의 운영·관리에  
관한 지도·감독과 다음의 사  
항

가. 삭 제

나. 법인의 임원 취·해임 승  
인

다. ~ 자. (생 략)

16. ~ 32. (생 략)

33. 삭 제

34.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 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  
조에 의한 관할 수탁기관에  
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

35. · 36. (생 략)

37. 삭 제

38. 관할구역 내 공·사립 일반  
고등학교·특성화고등학교·  
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 
자율고등학교의 다음 사항의  
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  
독

가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  
항

나.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  
한 장학지도

다. 진로·진학 지도에 관한  
사항

-----  
-----

나. ----- 취임·해임 --

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

16. ~ 32. (현행과 같음)

34. 「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 
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  
조-----  
-----

35. · 36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라.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 
위탁과정 운영

39.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  
등학교·특수학교 및 이에 준  
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사항의  
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가. 노동인권교육

나. (생략)

40. (생략)

41.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·고  
등기술학교·특수학교 및 이  
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 
사항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  
도·감독

가. ~ 마. (생략)

바. 교육정보화에 관한 다음  
의 사항

1) 유·무선망 구축 및 운  
영에 관한 사항

2) (생략)

42. (생략)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  
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  
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

39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가. 노동인권교육 및 직업교  
육 운영 지원

나. (현행과 같음)

40. (현행과 같음)

4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바. -----  
---

1) 유무선망 -----  
-----

2) (현행과 같음)

42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  
항) -----  
-----.

1. -----

의 휴직(6월 미만)·복직(6월  
미만 휴직)

2. ~ 5. (생략)

6. 공립 중·고등학교의 학생  
학비 감면

7. ~ 10. (생략)

1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  
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

가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  
공무직원 정원규칙」 별표에  
따른 자체채용 정원에 해당  
되는 자

나.·다. (생략)

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 
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 
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  
다.

1.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 
의 휴직(6월 미만)·복직(6월  
미만 휴직)

2. ~ 8. (생략)

-----6개월 -----6개월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 중고등학교-----

7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
가.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  
공무직원 정원 규칙」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 
사항) -----

1. -----

-----6개월 -----6개월

2. ~ 8. (현행과 같음)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8841호, 시행2022. 4. 20]

**제18조(교육감)** ①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·도에 교육감을 둔다.

②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·도를 대표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**제19조(국가행정사무의 위임)** 국가행정사무 중 시·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. 다만,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0조(관장사무)**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1.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2.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3.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
4.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
8. 평생교육, 그 밖의 교육·학예진흥에 관한 사항
9. 학교체육·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
10.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
11. 교육·학예의 시설·설비 및 교구(敎具)에 관한 사항
12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1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
14. 기채(起債)·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
1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16.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17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

**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**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②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(특별시·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·출장소 또는 읍·면·동의 장을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③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3. 23.>

④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21. 3. 23.>

**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**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#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권한을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및 지원한계를 해소하고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

4. 작성자 : 행정국 행정과장 황경식